

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제명의 개정 (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→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)
-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(안 제3조)
-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조항 정비 및 신설 (안 제6조, 제6조의2)
- 피해 가축농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(안 제7조)

- 행정업무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비상설화함 (안 제7조의2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본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‘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’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,
-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는 살처분, 유·사산, 이동제한 등의 보상 외에 추가 영업 손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 및 시군이 청구한 안전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음
- 따라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의 운영에 있어 의례적 개최를 지양하고 필요시에만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비상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- 이에 상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제명의 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
- 안 제3조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도지사가 긴급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
- 안 제6조는 조 제목이 ‘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조 제목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정비한 것으로 제6조 중 조 제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‘제6조의2(가축전염병 예방)’로 하였으며, 이는 적절한 조문의 정비라 보여짐
- 안 제7조는 피해 가축농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안 제7조의2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 및 시군이 청구한 안전만 협의하는 협의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례적 개최를 지양하고 필요시에만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 이에 따라 위원의 해촉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

나. 상위법령 등 검토
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“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고 되어 있으며, 같은 조 제3항에서는 “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”고 명시하고 있는바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시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,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조문 규정 및 지원 근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이에 따라 제명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의 비상설화로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예상되고, 조문의 정비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보상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
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,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피해 가축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,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가 비상설화 된 만큼 협의회 위원풀(pool)을 사전에 구축 하여 피해보상 협의 청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